

## 인권에 대해서

인권이란 "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권리이다."

누구나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 
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.  
누군가의 인권을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 
해서는 안 됩니다.



### 모두가 서로 인정하자

성별이나 나이, 국적이나 출신지가 달라도 모두 같은 사람.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 함께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.

### 모두가 자신답게

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을 방해하거나 방해받아서 안 됩니다.

### 모두의 생명을 소중히

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돌도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. 서로 배려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.

### 법무성 인권옹호기관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령 18가지 항목을 정했습니다.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01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자                       | 10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 |
| 02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자                      | 11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인권을 배려하자               |
| 03 고령자의 인권을 보호하자                      | 12 인터넷상의 인권 침해를 없애자                      |
| 04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                 | 13 북한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                |
| 05 부락 차별(동화 문제)을 해소하자                 | 14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                   |
| 06 아이누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            | 15 성소수자에 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                  |
| 07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자                      | 16 인신매매를 없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08 감염병과 관련된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               | 17 지진재해 등 재해가 원인인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            |
| 09 한센병 환자·전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 | 18 계층 정보(유전 정보)에 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          |

## 법무성 인권상담창구 [전국 공통]

**인권 전반** 모두의 인권 110번 **TEL 0570-003-110**  
[접수시간] 평일 8:30-17:15

**어린이** 어린이의 인권 110번 **TEL 0120-007-110**  
[접수시간] 평일 8:30-17:15

**외국인** 외국어 인권상담전화 **TEL 0570-090-911**  
[접수시간] 평일 8:30-17:00

외국어 인터넷 인권상담 접수창구  
<https://www.moj.go.jp/JINKEN/jinken21.html#01>



## 부당한 차별과 인권에 관한 상담 [오кина와현]

**오кина와현 인권상담창구 TEL 098-863-9281**

■매주 월/수/금(공휴일 제외) 10:00-12:00 / 13:00-15:00

[mail] [jinken-soudan@pref.okinawa.lg.jp](mailto:jinken-soudan@pref.okinawa.lg.jp)

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관한 상담 [오кина와현]

**LGBTQ 니지이로 상담 TEL 098-880-8434**

■매주 토요일 10:00-17:00

오кина와현 어린이미래부 여성력·다이버시티추진과

**TEL 098-866-2500 FAX 098-866-2589**



오кина와현 HP

🔍 오кина와현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 조례 **검색**



조례특설 HP

# 오кина와현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 조례

— 2023년 10월 1일 전부 시행 —

사람은 누구나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.  
사람들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 
마음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.



오кина와현은 지속 가능한  
개발목표(SDGs)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## 조례 제정의 경위

오키나와현에서는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장소나 인터넷상에서 특정 개인 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행해지는 특정 인종, 국적, 출신 등 본인의 의사로는 바꾸기 어려운 속성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,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편견이나 부당한 차별 등이 존재하고 있어, 그 해소를 위한 대처를 더욱 강력하게 사회 전체가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.

### 목적

사회 전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여 부당한 차별 없는 사회 형성을 도모한다.



### 기본이념

어떤 사람도 인종, 국적, 신조, 성별, 성적 지향, 성적 정체성, 사회적 신분, 출신 및 그 외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오키나와현, 시정촌, 현민 및 사업자가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부당한 차별 없는 사회 형성을 추진한다.

### 현·현민·사업자의 책무



**현의 책무**  
부당한 차별이 없는 사회 형성에 관한 시책 실시.



**현민의 책무**  
인권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높인다. 오키나와현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.



**사업자의 책무**  
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부당한 차별 해소 대응을 추진. 오키나와현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.

### 기본방침

- 1 인권존중 이념을 보급하고, 그에 대한 현민의 이해를 심화한다.
- 2 부당한 차별에 관한 상담에 적절하고 정확하게 대응한다.
- 3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는 배경 및 기타 차별에 대한 실정을 고려하여 대응함으로써 부당한 차별 해소를 추진한다.

### 기본방침에 따라 오키나와현이 실시하는 시책

####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한 시책

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교육 및 계발

오키나와현민임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처

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에 관한 조치  
(표현활동의 개요 및 표현활동을 한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공표)

####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에 관한 시책

###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에 관한 조치의 흐름

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이루어졌다는 의사 표시 등을 통해 사안을 파악

"오키나와현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 심의회"에 자문

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당성이 인정된 경우(답신)

표현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

#### 공표 조치

- 표현활동의 개요, 성명 또는 명칭 공표
- 나하지방법무국에 통지

※공표 조치는 계발이 목적이며 규제적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.

## Q&A

### Q. "부당한 차별"이란?

본인의 의사로는 바꿀 수 없는 속성 또는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구별, 배제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. 조례에서는 "부당한 차별적 언동" 과 "부당한 차별적 취급"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



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글

음식점에 대한 입점 거부

아파트에 대한 입주 거부

### Q. "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"이란?

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그 생명, 신체, 자유, 명예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취지를 고지하거나 일본 외 출신자를 현저히 모멸하는 등 일본 영역 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출신임을 이유로 일본 외 출신자를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말합니다. ※인터넷상의 글도 포함됩니다.



협박적 언동

현저하게 모멸하는 언동  
※차별적이고 경멸적인 의미로 관용, 동음, 사물에 비유하는 언동

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선동하는 언동

### 혐오 발언에 대해서

특정 민족이나 국적의 사람들을 비방중상하고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차별적 언동을 일반적으로 혐오 발언(헤이트 스피치)이라고 하는데, 법률상 정의가 없고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.

"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"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, 단순히 '혐오를 드러낸 발언'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혐오 발언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차별의식을 낳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언동입니다. 모두가 혐오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